

2026년 목재 수출 지원사업(바우처) 추가모집 공고

목재 기업의 국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**추가 공고** 하오니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5.

한국임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지원내용 : 수출 과정 전반에 필요한 사업*을 **참가기업별 배정예산 내 자율 선택하여 사용**

* 수출 컨설팅, 해외인증 취득, 바이어 초청, 박람회 참가 등(붙임 1 사업메뉴 참조)

- 모집규모 : 목재제품 수출기업 등 **성장기업 2개사**

- 모집기간 : 공고일로부터 **~ 6. 2.(화), 18:00까지**

* 타 기관 수출 바우처 사업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)과 **중복 지원할 수 없음**

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80% / 자부담 20%

- 지원기간 :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~ 2026. 11. 30.까지

* 정산인정기간 : 2026. 1. 1. ~ 11. 30.(기간 내 사업추진 및 비용 집행 완료 필수)

2. 지원대상

- 참가자격 : 목재류 HS코드(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코드)로 수출이 가능한 목재·목재제품(또는 이를 가공하는 설비 등)을 생산하는 업체 중 아래 성장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업체

* **산림청 소관 한국식 품목번호(HSK코드) 해당 제품에 한해 지원**

구분(지원유형)	성장기업
대상	수출실적을 보유(3만 달러 이상) 하거나, 수출 증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
지원한도 (국고보조금 기준)	15백만원
모집규모	2개사

* 추진 과정에서 지원규모, 배정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* 수출실적은 수출증빙자료(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무역협회 발급 등) 기준으로 직/간접 수출에 대해 인정

3. 제출서류

- 참가신청서, 목재 바우처 사업 참가계획서 등

제출서류	
▶필수서류	①참가신청서 ②바우처 사업 참가계획서 ③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④사업자등록사본 ⑤최근3개년재무제표
▶보유(해당) 시 제출서류	⑦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 ⑧수출 증빙서류 ⑨보유 인증 및 특허

4. 선정기준

* 평가표 상세내역 [붙임 2] 참조

- 평가방법 : 서류확인 후 서면평가 실시
 - 서류확인 : 제출서류 누락, 자격요건(산림청 관리 한국식 품목번호(HSK 코드)) 적정성 판단 및 계량(수출역량, 기업경쟁력) 평가

- 서면평가 : 계량평가 점수 확인 및 비계량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에서 제출한 계획서 비계량 평가

* 평가위원회 구성(5인)을 통해 계량·비계량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

** 평가업체별 비계량·계량 종합점수 고득점(60점 이상)순으로 업체를 선정하며, 이때 비계량 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 최대·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산정함

- 평가결과 :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

5. 지원일정

공고 및 접수	▶▶	참여기업 선정	▶▶	약정서 체결	▶▶	중간점검	▶▶	사업 추진	▶▶	지원금 정산
공고일 ~ 2026. 6. 2.(화) 18:00 까지		6월 2주차 참여기업 선정		6월 3~4주차 약정서 체결		10월 중 사업 추진 현황 중간 점검		~11.30 참여기업별 사업 추진 후 결과보고서 제출		성과 확인 * 결과확인 후 정산

※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

6. 신청서 접수

○ 접수방법
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 전자메일(hsb1217@kofpi.or.kr)로 제출 ※ 서명/날인이 된 페이지 및 용량이 초과하여 첨부 못한 서류는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○ 2026. 6. 2.(화) 18:00까지 제출
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서 1부(서식 1, 2)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(서식 3) -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(신청서 첨부서류 참조)

○ 문의처: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한수빈 주임 ☎ 02-6393-2636

※ 참여기업 유의사항

-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 필요
- 지원금은 선정 기업이 먼저 집행하고, 한국임업진흥원원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됨
- 지원금은 신청서 정산금액에서 80%를 지원하며, 부가가치세는 정산 금액 대상에서 제외
- 참여기업 수출 실적은 차년도 분기별 조사 예정으로 협조 요청

붙임 1

목재 수출 바우처 사업 사업메뉴

○ 지원메뉴 : 참여기업별로 필요한 사업메뉴를 배정예산 내에서 선택·사용

구분	지원내용						
수출컨설팅	·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상담(컨설팅) * 수출실무 관련 컨설팅, 목표시장 수출전략 수립, 중장기 성장전략 등 수출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(컨설팅) 등						
전문인력 양성	· 무역실무, 제품개발, 상품화,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* 수출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반에 걸친 관련 외부교육 수강 비용						
지적재산권 출원 (국내·해외)	· 자사 제품 및 브랜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, 실용신안, 상표권, 디자인권 출원·등록 *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절차 대행비용(상담 포함) 등 지원						
해외인증 취득	· 해외 인증 취득 및 갱신(연장, 사후심사 등) 지원 * '26년(26. 1. 1. ~ 11. 30.) 에 취득한 인증에 한해 지원 * 지원범위 : (인증비) 심사비 및 등록비, 실사비, 제품시험비 / (대행비) 통번역비, 상담비(컨설팅비)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						
해외박람회 참가	· 해외박람회 직접비용 : 일정 기간(26. 1. 1. ~ 11. 30.) 내 개최되는 박람회에 한함 - 오프라인 해외전시회: 부스임차료, 장치 설치비, 집기 대여비, 항공료, 전시품 운송비(왕복 해상/항공 운송비) 등 * (항공료)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(왕복 이코노미 기준, 최대 2인) 가능하며, 개막 3일 전부터 폐막 3일 이내만 인정(현지시각 기준) ** (통역비) 업체당 1인 현지통역비 지원(국가별 1일당 지원 한도 참고) <table><tr><td>국가별 1일당 지원 한도</td><td>(일본) 30,000 엔 이내</td><td>(중국·동남아) 150 달러 이내 *싱가포르, 홍콩 250 달러 이내</td></tr><tr><td>(미주) 250 달러 이내</td><td>(유럽) 250 유로 이내</td><td>(기타) 200 달러 이내</td></tr></table> *** (지원불가 항목) 숙박비 등 체재비	국가별 1일당 지원 한도	(일본) 30,000 엔 이내	(중국·동남아) 150 달러 이내 *싱가포르, 홍콩 250 달러 이내	(미주) 250 달러 이내	(유럽) 250 유로 이내	(기타) 200 달러 이내
국가별 1일당 지원 한도	(일본) 30,000 엔 이내	(중국·동남아) 150 달러 이내 *싱가포르, 홍콩 250 달러 이내					
(미주) 250 달러 이내	(유럽) 250 유로 이내	(기타) 200 달러 이내					
해외 바이어 초청	·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구매자(바이어) 초청 지원(항공료 및 숙박비) - 항공비(이코노미좌석 기준), 숙박비(1박 20만원 한도) - 초청대상 바이어 1업체당 1명 지원 및 사업예산 한도 내 지원 - 초청대상 : 목재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수입바이어, 해외유통업체, 중간 유통업체(벤더)						

구분	지원내용
샘플통관·운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관련 운송 및 통관과 관련하여 국제특송(EMS, DHL), 시험수출(정식통관) 표본(샘플)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·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- 수출신고필증 상 ⑩거래구분 92 / ⑫결제방법 무상거래(GN) 표기 - 국제 특송 샘플발송비 :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- 시험수출(정식통관) 표본(샘플)송부비 : 국내·외 내륙운송비, 수출신고필증 발급비, 현지 통관 비용, 항공(해상)운송비 등
홍보 콘텐츠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사 제품 및 브랜드 해외 홍보 목적으로 외부위탁을 통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
통·번역 및 서류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·번역 서비스 및 서류대행

- * 「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」에 참여한 기업은 본 사업의 '해외박람회 참가' 지원항목에 중복 신청 불가
* 참가기업 수요에 따라 신규지원 메뉴가 필요한 경우 검토하여 신설 가능
* 부가가치세(VAT)는 지원 제외

붙임 2 목재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평가표

<평가표(안)>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세부평가내용	
계량 (40)	수출역량	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- 3년 미만의 경우 가중치 적용	10	구간 점수	(10) 10억 원 이상 (5) 10억 원 미만
				가중 치	(3개년) 1.0 (2개년) 0.8 (1개년) 0.6
		② 수출금액(달러(USD)) - 최근 3년간 평균	10	성장	(10) 10만 달러 이상~ (8) 5만 달러 이상~10만 달러 미만 (5) 3만 달러 이상~5만 달러 미만
	기업 경쟁력	③ 목재생산업 등록여부	5	등록 5 / 미등록 0	
		④ 인증서 - 국제표준화기구(ISO),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등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에 한함	15	인증서 1개당 5점 * 기타 해외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 위원에서 인정 여부를 판단	
비계량 (60)	수출 적합성 및 의지	⑤ 사업계획 적정성 - 사업목표 타당성 -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- 신청예산의 적정성	30	비계량 평가 (평가위원 종합평가)	
		⑥ 제품경쟁력 -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 - 수출 목표시장 적합성	15		
		⑦ 성과목표 - 성과목표 도전성 -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	15		
합계			100		
가감점	가점	⑧ 신규 참여기업	5	목재 수출지원 사업 참여 이력 없는 기업	
			3	목재 수출지원 사업에 최근 2년 이내 참여 이력 없는 기업	
			⑨ 기타 : 선도유망 목재기업(KWood)	2	
	감점	⑩ 사업 불성실 업체	-5	선정 취소 및 불참 통보	

* (성장)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3만 달러 이상